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

기 관 명 북구, 동구, 해운대구, 서구

내 용

1. 종업원 위생교육 미 실시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
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육포장 처리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가공업 등의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종업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[별표 11] 및 제62조 [별표 16]에 따라 각각 ‘경고(1차 위반)의 행정처분’과 ‘과태료 10만원(1차 위반)’을 부과하여야 한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북구, 동구, 해운대구는 아래 【표1】 과 같이 종업원에게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(주)○○○○ 등 3개 업체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(1차, 10만원)만 처분하고 경고(1차 위반)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【 표1 】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명세

처분 기관	업종	업체명	위반내용	처분 일자	행정처분기준	행정처분	기타
○구	식육 포장 처리업	○○ ○○	종업원 위생교육 미 실시	2015. 4.20.	과태료 10만 원 경고	과태료 10만 원	※ 행정처분(경고) 미 실시
○구	식육 판매업	○○ ○○		2017. 1.24.	과태료 10만 원 경고	과태료 10만 원	
○○○구	식육 판매업	○○ ○○○		2015. 9.17.	과태료 10만 원 경고	과태료 10만 원	

2. 종업원 건강진단 미 실시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
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축산물의 채취·가공·포장·보관·운반·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(다만,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·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)은 영업의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[별표 4]에 따라 ‘과태료 20만원(1차 위반)’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[별표 11]에 따라 ‘경고(1차 위반)의 행정처분’을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동구와 서구는 아래 【표 2】와 같이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하는 등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(1차, 20만 원)만 부과하고 행정처분(1차, 경고)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【표 2】 종업원 건강진단 미 실시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명세

처분 기관	업종	업체명	위반내용	처분일자	행정처분기준	행정처분	기타
○구	식육 판매업	○○ ○○	종업원 건강검진 미 실시	2015. 4.8.	과태료 20만 원 경고	과태료 20만 원	※ 행정처분(경고) 미 실시
○구	식육 판매업	○○ ○○		2016. 5.23.	과태료 20만 원 경고	과태료 20만 원	

조치할 사항 북구청장, 동구청장, 해운대구청장, 서구청장은

[주의] 앞으로 종업원 위생교육 및 영업자·종업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